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4. 6. 12.(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김홍일 위원장
 -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오전에 전북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지진 관련 재난방송을 즉시 시행했으며 다행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피해 발생 대비 재난방송 대응을 위해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송사도 재난방송 발생 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난방송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26차, 제27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김홍일 위원장

- 다음에는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3년 제19차, 제39차, 제44차, 2024년 제24차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 등을 참고하여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24-28-117)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의결안건 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방송공사 KBS1DTV방송국 등 총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경과입니다. ‘22년도 9월에 ‘23년~’26년도에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연도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재허가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2개사의 146개 방송국입니다. 세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는 <표>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콘텐츠 경쟁력,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직전 재허가 시에 제출한 계획에 대한 실적이나 향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심사항목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중점 심사항목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장점검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국민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심사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총 9인의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 항목과 배점을 결정하며,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본 재허가 세부계획을 따르되, 세부 심사 기준 등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사사항별 배점은 총점 1,000점을 기

준으로 하되,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100점을 추가하여 1,100점을 1,000점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재허가에서도 이전 재허가 심사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배점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심사사항에서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조정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심사 관련 주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현재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심사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23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심사 당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업계획은 '24년 재허가 신청서 접수 시 보완·제출하도록 하여 일괄된 재허가 심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도 재허가 대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1개인 상황을 고려해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통합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의견청취 부분에 청년보좌역과 20:30 정책자문단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청년이 바라는 방송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년도 재허가 세부계획 때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되었던 심사 투명성 제고나 종이 없는 심사 등 신청서류 간소화, 세부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던 부분들은 '24년 세부 계획에도 기본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재허가 여부 등의 결정 관련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고, 허가유효기간으로는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650점에서 70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시 3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심사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경우,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부 계획이 의결되면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 접수와 기술심사 등을 진행하고, 2024년 11월부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까지 재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허가 대상이 146개 방송국인데 그중에서 KBS방송국이 111개에 달하는 것 맞지요?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111개 방송국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KBS는 아시다시피 전국을 서울 본국과 경인국, 지역총국 9개, 지역국 9개 등 2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0개 지역별로 1DTV가 해당되고, 2DTV 11개가 포함되어서 UHD-TV와 DMB, 각종 AM·FM, 단파 등 라디오까지 포함해서 다수 매체의 방송국이 이번 재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쪽은 타사 대비 재허가 대상국의 방송국 수가 많은 상황으로 111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보고 내용 <5> 심사 관련 주요 개선사항 중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세부평가방법에 추가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재허가 기간 동안의 편성실적은 평가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이전 재허가 시 저출생·지역소멸 관련해서는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반영된 바 없어서 편성실적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허가 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관련 편성실적을 참고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올해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1DTV방송국 등 총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입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저출생·지역소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심사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인 점, 그리고 청년보좌역과 20·30 정책자문단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등 방송 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청취를 강화하는 점 등이 이전 심사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주요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등 심사 투명성 제고, 종이 없는 심사, 신청서류 간소화 등 2023년도 재허가 심사 시 실시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올해 재허가 심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재허가 세부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게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을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아까 보고하실 때 5페이지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 얼핏 제가 들으니깐 1,100점, 텔레비전 같은 경우 평가 400점 그다음에 심사사항 <2>, <3>, <4>, <5>, <6>번을 다 더하면 1,100점입니다. 1,100점을 1,000점으로 환산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1>번을 제외한 <2>, <3>, <4>, <5>, <6>번을 다 더한 700점을 600점으로 환산해서 위에 400점과 합치는 것이지요?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지금 보고하신 대로 사무처는 관련 법령과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서 2024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4-28-118)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해선 방송광고정책과장

- <의결안건 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입니다.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3월~5월까지 과태료 부과 절차를 검토하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21일 국조실로부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 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감경 금액 등을 위원회 의결을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최종금액을 재의결하여 과태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위원회 의결 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겠습니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자진납부 종결을 제외하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종전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 심의·의결을 두 번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 전해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두 번 거쳤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번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개정의 경우는 방송광고정책과에서 종전에 불필요했던 절차를 일부 개선하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으로 변경하게 됐을 때 사업자 의견 제출 기회가 제약되는 등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전해선 방송광고정책과장

-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을 변경해서 과장 전결로 사전 통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의견제출 기회를 제약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할 때 과장 전결로 처리하기 위한 위임 근거 규정도 바로 마련할 예정이지요?

○ 전해선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위원회 의사 일정에 맞춰서 방통위 위임 전결 세칙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안건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에 대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과 종결 처리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8조가 준용되고 이는 위원회 의결 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이번에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면 위원회 심의·의결이 1회로 간소화됩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4-28-119~284)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아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위반사업자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정기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입니다. 총 위반건수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검항목 및 사업자별 위반건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처분대상 사업자입니다. 행정처분 대상 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위반소지가 있는 228개 사업자에 대해 2회에 걸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제척기간이 경과한 18개 사업자, 법인이 청산된 1개 사업자, 의견 제출을 통해 위반혐의가 소명된 14개 사업자, 既 행정처분한 7개 사업자를 제외한 총 188개 사업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사항별 위반사업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별 위반사업자 및 처분기준입니다. 사무소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엠브레인 등 26개사는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변경신고를 진행하여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여부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압컴퍼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
 니다. 수사기관 고발 및 시정명령 여부 검토(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1안>은 (주)압컴퍼니를 고발하는 안, <제2안>은 (주)압컴
 퍼니를 고발하지 않으며,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변경신고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수·양도 및 합병·분할 인가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양도 시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나, (주)가치브라더는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가치브라더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양수·양도 및 합병·분할 신고 여부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양도 및 합병·분할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2개사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휴·폐업 승인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려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올로케이션 등 10개사는 휴·폐업 승인을 진행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폐업 신고 여부입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는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려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티웨이항공 등 34개사는 휴·폐업 신고를 진행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약관 공개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이용약관을 위치정보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경성테크놀로지 등 11개사는 이용약관을 공개하여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태료는 <제1안> 기준
 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이용약관 명시항목 포함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
 자가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각호 및 제19조제1항각호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솔루엠 등 36개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 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이용약관 변경내용 공개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 및 내용을 위치정보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주)모토브 등 3개사는 이용약관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여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위치정보법 제21조의2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구글코리아(유) 등 13개사는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시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2분의 1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감경하는 안입니다. 점검자료 제출 미협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휴·폐업여부 확인을 위한 '운영여부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달리 가중·감경 사유는 없습니다.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업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관련매출액은 위치정보사업 관련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은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위치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별 관련매출액 및 기준금액 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적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적 조정은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한 점, 위반사항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을 감경하였습니다. 최종 과징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발 및 시정조치 명령 검토(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제1안>은 (주)티머니 등 52개사를 고발하는 안이며, <제2안>은 (주)티머니 등 52개사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하되,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서비

스를 이미 폐업 및 양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명령에 실익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여부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즉시 파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발 및 시정조치 명령 검토(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제1안>은 파인디지털(주) 등 6개사를 고발하는 안이고, <제2안>은 파인디지털(주) 등 6개사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폐업하여 시정조치 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는 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대한 양의 실태점검 그리고 조사 결과 정리 때문에 사무처에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치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여 중요성이 높은 정보입니다. 법 제정도 오래 전인데 실태점검이 왜 이번에 처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법 제정은 20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기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가 없었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후 위치정보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우려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에 저희들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그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간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전체 규모가 2,7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한 188개사 정도 됩니다.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비율적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2005년 이후 실질적으로 첫 번째 실태점검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사업자들이 단순히

휴·폐업 신고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단순 위반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사업자들은 법 인식을 제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호조치 수준이 개선되어서 다음번 점검에는 위반사업장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 같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애플 등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의견이 본인들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다” 그런 주장도 했었지요?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였고, 주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애플과 구글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위치정보시스템을 판단함에 있어 단말기단까지 판단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단말기단까지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정보와 위치정보를 충분히 결합하여 개인위치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여러 사업자들의 일부 주장들, 예를 들어 암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부 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들도 있지요?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대부분 이런 실태점검 조사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미 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 윤정은 위치정보정책팀장

- 예, 시정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지 않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실태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호소했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사업자들이 청년들이 하는 벤처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고, 또 하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암호화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한다든가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번 실태점검과 그에 따른 이번 위원회 의결이 위치정보 산업계에 대해서 위치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되고, 또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에 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 산업이 계속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함께 위치 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한 내용입니다. 이번 실태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위반내용을 보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폐업 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사물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휴·폐업 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공개(명시항목 포함), 변경내용 공개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상당수 적발되었습니다.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미이행,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미이행, 사무소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 등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사업자들이 기본적 법적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중 일부 행위에 대한 시정노력 등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일부 금액을 감경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 사무처에 제시했던 <제2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에 근거한 기준금액에 필수적·추가적 조정을 거쳐서 원안과 같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기관 고발이 가능한 위반사항도 있기는 하나 이번에는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고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과 효율적 관리감독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 관련 홍보나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제2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제2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기반이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결과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에 노력을 해주시고 이와 별개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7.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6분 폐회 】